

『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안』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변우정 의원 외 5인

2. 제안이유

- 환경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해 야생동물에 대한 수렵이 규제됨에 따라 야생동·식물보호법 제12조 제2항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농촌 및 산간지역에 멧돼지 등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피해액의 일부를 보상함으로서
-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영농의욕 고취, 야생동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구미시 지역안에 있는 농경지에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 가능 (안 제3조)
- 나. 농가의 피해 면적은 실 소유 면적에 관계없이 경작 면적을 기준으로 규정함 (안 제4조)
- 다. 동일 경작지에 대하여 당해 연도에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상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5조)
- 라. 보상 제외 대상 (안 제6조)
 - 총 피해 면적이 330㎡미만인 경우(단 피해 보상액이 20만원 이상인 경우는 보상 가능)
 - 총 피해 보상 산정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
 - 경작이 금지된 지역내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

마. 피해농가에서 신고한 사항을 읍·면·동장은 현지 조사를 실시한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함(안 제7조)

바. 피해 보상과 관련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 운영함(안 제9조)

- 위원장을 포함 7인 이내로 구성
- 위원장은 출장소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삼립과장, 농정과장이 됨
- 위촉직은 시의회의원, 농업경영과 야생동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, 기타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함

4. 참고사항

- 야생동·식물보호법
- 농어업재해대책법

5. 검토의견

- 본 제정 조례안은 야생동·식물보호법에 의해 보호 받지 못하는 농촌 및 산간지역에 멧돼지 등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피해액의 일부를 보상함으로써
-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영농의욕 고취, 야생동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사료됨